

## 산업자원부 전력관련 업무 분장 및 직제 개편

### ◇ 개정이유 ◇

21세기 신지식·정보화 시대에 대비하여 정부기능을 핵심역량 위주로 재편하고 효율적인 국정운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과 또는 담당관의 설치, 사무분장 및 직급별 정원 등 동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[산업자원부령 제55조]

### 업 무 분 장

#### 가. 전력산업구조 개혁단(신설)

##### (1) 구조개혁팀

1. 전력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의 총괄·조정
2.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관련하여 정부로 이관되는 공익기능 업무의 분석 및 이관에 관한 사항
3.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위한 제반 법령의 제·개정
4.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른 채권자 및 소액주주 보호 등 법률적 분쟁의 처리
5.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관련한 대국민 홍보 및 이해증진을 위한 업무
6.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위한 정책연구과제의 추진
7.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위한 재원마련 등 재정·제도적 기반의 확충
8.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른 기타 에너지 지원정책에 관한 사항
9. 전력시장의 구조변경에 따른 기존 전력정책의 조정·요금구조 및 결정방식에 관한 사항
10. 기타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관련된 사항

##### (2) 시장조성팀

1. 경쟁도입에 따른 전력시장 진입제도의 조정
2. 전력 입찰시장의 설계 및 운영규정의 제정

에 관한 사항

3. 전력 입찰시장의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
4. 전력 입찰시장의 운영을 위한 제도의 준비
5. 전력산업 구조개편 관련 민자발전사업 및 구입전력 관련 업무의 수행
6. 발전사업자간 협의체의 수립 및 운영
7. 전력공급기능 담당기구의 설치 및 운영관리
8. 전력산업 구조개편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개발·운영
9. 전력산업 구조개편 관련 재무·회계 업무
10. 기타 전력 경쟁시장의 조성과 관련된 사항

#### 나. 자원정책실

##### (1) 자원정책과(중요내용 발췌)

1.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의 수립·조정
2. 에너지 및 지하자원의 종합계획의 수립·조정
3.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운용·관리
4. 에너지 가격의 일반정책에 관한 사항
5. 에너지 수급계획의 수립·조정과 소비실태의 분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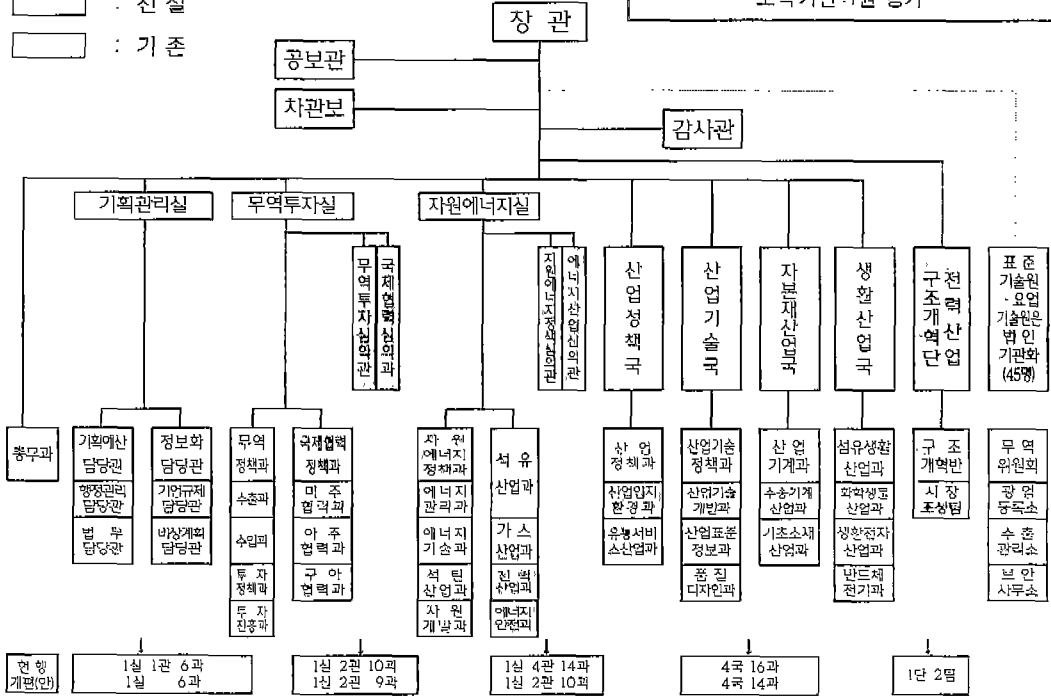
##### (2) 에너지관리과(중요내용 발췌)

1. 에너지절약시책의 총괄·조정
2.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운용
3.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 및 연차별계획의 수립·시행

# 산업자원부 개편 조직

<본 부> 3실 13국 49과→3실 11국(관) 43(팀)  
 <소속기관> 1위원회, 7소→1위원회, 1원 7소  
 <증 감> 본부 :2관 6과 감소(순감 7과 :1과 이체入)  
 소속기관 :1원 증가

□ : 신설  
 □ : 기존



- 4. 에너지융합리화자금의 운용
- 5. 부문별 에너지절약시책의 수립·추진
- (3) 에너지기술과(중요내용 발취)
  - 1. 에너지 및 지하자원의 장·단기 기술개발 정책의 수립·추진
  - 2. 에너지 및 지하자원 기술개발 사업계획의 수립·시행
  - 3. 지역 에너지계획의 수립지원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에너지 협력사업 추진
  - 4. 에너지 및 지하자원 기술에 관한 국제협력
  - 5. 에너지 소비절약 기술의 연구개발
- (4) 자원개발과(중요내용 발취)
  - 1. 국내외 에너지·광물자원(국내 석탄은 제외한다)의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·운영
  - 2. 국내 광산물의 수급안정에 관한 사항
  - 3. 석재·골재자원의 조사와 합리적인 개발에

- 관한 사항
- 4. 광업법 및 광업권제도의 운용
- 5. 광산보완법의 운용 및 광산 안전관리 대책의 수립·추진
- (5) 석탄산업과(중요내용 발취)
  - 1. 석탄산업 종합계획의 수립·추진
  - 2. 석탄 및 연탄의 가격조정에 관한 사항
  - 3. 석탄광업의 생산 및 기술지원과 육성·개발
  - 4. 석탄 및 연탄의 수급안정·유통·저탄 및 품질관리
  - 5. 석탄산업 합리화 계획의 수립·추진
- (6) 석유산업과(중요내용 발취)
  - 1. 석유에 관한 기본정책의 입안·조정
  - 2. 석유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
  - 3. 석유의 가격정책 및 가격제도의 운용

4. 석유수입·판매부과금의 관리·운영에 관한 사항
5. 석유의 장·단기 수급계획의 수립·조정 및 수출입에 관한 사항

(7) 가스산업과(중요내용 발췌)

1.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·운영
2. 가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
3.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의 가격제도 및 운용에 관한 사항
4.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의 장·단기 수급계획의 수립·운영
5.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의 수급안정 및 비축에 관한 사항

(8) 전력산업과(전력정책과와 수화력발전과 통합)

1. 전력정책의 총괄·조정
2. 장기 전력수급 계획의 수립 등 전기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·추진
3. 전기요금의 조정 및 전기공급규정의 운용에 관한 사항
4. 전력수급의 안정, 비상시 전력수급 및 전력 수요 관리정책의 수립·추진
5. 민간발전사업의 지원시책의 수립·추진
6. 전기사업법·전기공사법·전력기술관리법·전기공사공제조합법·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및 농어촌전화촉진법 등 관계법령의 운용
7. 한국전력공사 등 소관기관과의 업무협조
8. 전원입지정책의 수립·추진·홍보 및 전원 개발에 따른 환경보전
9. 수력·화력발전소와 송전·변전·배전시설의 건설·운영의 지원
10. 농어촌 전화사업의 지원시책 수립·추진
11.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
12. 전기공사업의 육성·지원
13. 전력기술인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
14. 남북간 및 국가간 전력협력에 관한 사항
15. 기타 전력산업과 관련된 사항

(9) 원자력산업과

1. 원자력발전에 관한 업무의 종합·조정과 기본정책의 수립·추진
2. 원자력발전 관련시설의 입지·건설·운영의 지원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3. 방사성폐기물관리(사용후 핵연료의 처리·처분을 제외한다)대책의 수립·시행
4. 원자력발전 연료 수급계획의 수립·시행
5. 전력 및 원자력발전에 관한 기술개발 정책의 수립·추진
6. 원자력발전 설비 및 기술수출 지원
7. 대북한 경수로 건설사업의 지원 및 원자력 발전 관련 국제협력
8.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시책의 수립·추진 및 관련 법령의 운용
9. 원자력발전 사업의 홍보시책 수립·시행
10. 기타 원자력발전 관련 산업체의 육성 등 원자력 산업의 진흥에 관한 제반 사항

(10) 에너지안전과

1. 에너지안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·운영
2. 가스·전력·석유 등 에너지(원자력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)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3. 가스안전관리 부담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
4. 가스안전기기 및 기타 에너지안전 관련 기술·기기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
5.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송유관사업법의 운용
6. 도시가스사업법·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·전기사업법 및 기타 에너지 관련 법령중 안전에 관한 규정의 제·개정 및 운용에 관한 사항
7. 가스의 안전관리 및 시설개선 사업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
8. 지하매설 가스배관의 전산화 추진에 관한 사항
9. 가스·전력·석유 등 에너지 안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
10. 한국가스안전공사·한국전기안전공사와의 업무협조 및 한국가스공사와의 안전에 관한 업무협조
11. 에너지 안전에 관한 홍보